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시설기준·장비기준·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 1) 응급실 시설은 서로 인접하고 다른 의료시설과 구별되어야 하며, 응급실과 응급전용 중환자실, 입원실 및 수술실, 검사실, 중재실, MRI실 등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근접성을 갖추어 설치·운영해야 한다.
- 2)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은 응급실 인근에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소아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별도 운영하는 경우 소아환자 진료구역도 응급실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3) 응급실 입구 환자 분류소에서 감염의사환자를 선별하고, 일반 응급환자와 동선을 분리하여 음압격리병상 등에서 격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응급실 전용 시설기준

시 설	시 설 기 준	비 고
가) 환자 분류소	· 환자진입구와 인접하여 설치할 것 ·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추 것 ·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감염의사환자를 위 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비치할 것
나) 소생실	· 최소 20㎡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 각각의 내변이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환자 진입구 및 구급 차출입구와 인접되 게 설치할 것
다) 처치실	· 최소 20㎡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 각각의 내변이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감염방지를 위해 손세척이 가능할 것	
라) 응급환자 진료구역	· 각 병상마다 상지·하지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 및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추 것 ·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갖추 것 · 1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병상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할 것
마) 중증응급 환자 진료 구역	·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구역으로 구성하 고 무정전 시스템을 갖추 것 · 각 병상마다 상지·하지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 및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추 것 · 산소, 음압, 고압공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갖추 것	

	8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바) 음압격리 병상	-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되고 필터링된 급기 - 배기 및 음압제어,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 것 -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 보호구 장비 및 손세척을 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추 것 2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일반격리병상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수에 포함됨
사) 일반격리 병상	-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수 있을 것 -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비를 갖추 것 3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아) 소아응급환자 진료 구역	- 각 병상마다 상지·하지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 및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추 것 -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갖추 것 3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 - 병상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할 것
자) 방사선실 · 일반촬영실 · CT촬영실	- 신체 전 부위 촬영이 가능할 것 - 산소와 음압 공급설비를 설치할 것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인근에 설치할 것
차) 응급전용 입원실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병상당 4.3㎡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가 입원·퇴원을 결정할 것. 다만, 전문진료과 중환자실 병상인 경우 입퇴원시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의 동의를 받을 것 · 전문진료과 중환자실 내 병상은 응급전용임을 표기하고 환자 대장을 관리할 것
카) 응급전용 중환자실	2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20병상 중 10병상은 전문진료과의 중환자실내 응급전용 중환자병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중환자실 규정을 준수할 것	
타) 응급전용	· 병원 내 수술실 중 하나를 응급환자 전용으	응급전용 수술실

수술실	로 지정하여 사용할 것 · 응급환자 전용 수술실이 사용 중인 경우, 별도의 수술실 1실을 응급환자 전용으로 지정하여야 함	사용권한을 당일의 응급의료 책임자에 부여할 것
파) 보호자 면담실	· 외부로부터 시청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 환자의 상태 설명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것	
하) 전용 주차장	· 응급실 입구에 인접하고, 평면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 · 응급환자 전용 표기가 되어 있을 것	구급차 2대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것
거) 보호자 대기실	· 최소 100㎡의 전용면적을 갖추어 것 · 입원환자의 인원수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음	30명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편의시설설치가 가능할 것
너) 회의실	20명 이상을 수용하여 교육·회의할 수 있도록 시청각 기자재 등을 갖추어 것	· 질 관리를 위한 컨퍼런스 등을 수행할 것
더) 재난 및 응급의료 지원실	재난, 교육, 의료지도 등 권역 내 응급의료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응급실과 인접하지 않은 공간에 설치 가능함

5) 의료기관 시설기준

시 설	시 설 기 준	비 고
가) 검 사 실	· 혈액성분검사(CBC), 혈액화학검사(Chemistry), 동맥혈 가스분석(ABGA) 및 요검사(U/A)가 가능할 것 · 심근효소검사, 혈액응고검사가 가능할 것	· 24시간 운영할 것 · 응급환자에 우선 사용되도록 할 것
나) MRI실	· 신체 전 부위의 촬영이 가능할 것 · 산소와 음압을 공급을 설비를 설치할 것	
다) 중재실	· 위내시경실, 담관내시경실, 기관지내시경실 각각 1실 이상 갖추어 것 · 혈관조영실, 심혈관조영실 각각 1실 이상 갖추어 것 · 각 시설은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라) 혈액은행	· ABO 및 Rh Typing, 교차 시험(Cross Matching), Coomb's Test 검사가 가능할 것	

	것	
마) 주산기 시설	· 신생아실을 갖출 것 · 분만실을 갖출 것	

나. 장비기준

1) 응급실 전용 장비

품명	개 수(단위: 개)						비고
	일반 구역	소아 구역	중증 구역	소생실· 처치실	중환자실	격리 병상	
가) 12유도 심전도기	1		1				
나) 심장충격기	1	1 (소아용 패드구비)	1	1	2	1	전원연결 없이 사용, 동기화 심 전환 가능할 것
다) 인공호흡기			5병상당 1	1실당 1	3병상당 1	5병상당 1	호흡방식 조절가 능, 경고장치가 있을 것
라) 무 영 등				1실당 1			
마) 이동 X-선 촬영기	1					1	
바) 이동식 초음 파 검사기	1						심초음파검사 가 능할 것
사) 환자 감시 장치	5병상당 1	5병상당 1	1병상당 1	1실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심전도, 혈압, 혈중산소포화도 측정이 가능할 것
아) 이동환자 감시장치	1						
자) 기도흡입기	1병상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1실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차) 산소량 조절장치	1병상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1실당 1		1병상당 1	
카) 급속혈액가 온주입기			1		1		
타) 정맥 주입기	5병상당 1	5병상당 1	1병상당 1	1실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약물 투여량의 정량 조절이 가

							능, 경고장치가 있을 것
파) 보온포				1실당 1	1		가온이 가능할 것
하) 중심체온 조절유도기				1			
거) 심부체온 측정장비				1			
너) 이동 심근 효소측정기			1				
데) 연령별 기도 확보 장비 및 보조호흡 도구		1					
레) 소아를 위한 기타 연령별 가구·소모품		1					
머) 무선장비 및 전산장비	1						TRS 단말기 구비, 응급의료정보 입력·조회
버) 구급차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						응급실과 교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것

2) 의료기관 내 확보해야 하는 장비

장 비	기 준
가) 뇌압감시장비	24시간 사용이 가능해야하며, 응급환자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할 것
나) 인공심폐순환기(ECMO)	
다) 지속적 신 대체 요법(CRRT) 장비	
라) 인큐베이터	

다. 인력기준

○ 응급실 전담 인력기준

인 력	인력기준	비 고
가) 의사	-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 ※ 소아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응급실 중환자 진료구역 내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 1명 이상이 상

	·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을 확보하고 매 10,000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할 것 ※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에 포함 ※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확보할 것	· 주할 것 · 응급실 일반 진료구역 내에는 24시간 의사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 소아전문응급센터인 경우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는 별표 6의 기준을 별도 적용
나) 간호사	·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확보 ·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을 추가 확보하고, 매 5000명마다 3명을 추가 확보할 것 ※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는 내원 환자당 추가 확보해야 하는 응급실 전담 간호사 수에 포함	· 응급전용 중환자실 및 응급전용 입원실과 별도로 할 것 ※ 소아전문응급센터인 경우 소아응급환자 전담간호사는 별표 6의 기준을 별도 적용
다) 응급구조사	· 재난, 교육, 전원관리 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5명 이상 · 구급차 운영을 위해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 구급차 및 관련 인력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
라) 그 밖의 인력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의무기록사의 면허·자격을 가진 자로 2명 이상 확보	정보관리 및 제공업무 전담할 것

2. 일반 운영기준(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응급실과 각 전문진료과의 당직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불시에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의 예비병상, 응급전용 수술장 등을 확보해야 한다.

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용가능한 응급의료 자원의 현황, 주요 응급질환별 수용가능 여부, 응급환자의 내원 및 퇴실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해야 한다.

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감염의사환자의 선별, 음압격리병상 등 감염예방 시

설의 운영, 동선분리 및 감염예방활동, 보호자 및 방문객 출입통제 등 응급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조치 및 제18조의3에 따른 중증도 분류의 지도 및 시행을 위해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중 응급의료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바. 제18조의3에 따른 중증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 다른 전문진료과목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호출해야 하며, 호출된 전문의는 해당 환자를 신속히 진료해야 한다.

사. 중증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이송하는 경우 당일의 응급의료 책임자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직접 이송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아.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진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어온 중증응급환자의 적극적 수용 등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매년 통과해야 한다.

자. 응급실 근무자 등은 소속, 전문과목, 면허·자격, 성명이 표기된 명찰을 달아야 하며, 면허·자격에는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차.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책임 진료와 권역 내 재난·교육, 구급대에 대한 의료지도 등 그 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